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7. 4.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7. 4

다. 상 정 일 자 : 제94회 제1차 정례회 사하구의회

제3차 총무사회위원회(2001. 7.14)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이정상 민원봉사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「전자공인」을 「전자이미지관인」으로 용어 통일
-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으로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 자동 발급되는 추세에 따라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규정 신설
-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, 재등록, 폐기시에 부산광역시에 신고조항 삭제

나. 주요골자

- 「전자이미지관인」으로 용어 통일
-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규정 신설
- 공인의 등록, 재등록, 폐기시에 부산광역시에 신고조항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최근 시분청 및 자치구(군)에서 전자문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각종 증명서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운용을 위하여 현행 구 조례의 내용중 “전자공인”을 “전자이미지관인”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과 우리 구 공인의 신조, 개각, 폐기시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 승인이나 폐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현실과 부합되게 내용을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킴이 타당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